

문서번호	감사담당관-5419
결재일자	2016.6.7.
공개여부	부분공개
방침번호	구청장 방침 제665호

★주무관	감사팀장	감사담당관	부구청장	구청장
김효선	정종모	한석규	김경호	06/07 김기동
협 조	기획예산과장	정광희		
	사회복지과장	최종현	행정 관리 국 장	고재식
	교육기획팀장	신태하	기획경제국장	고재풍
	예산팀장	김건희	복지환경국장	오정식
	장애인복지팀장	이재은	교육지원과장	홍선옥

- 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-
광진구 인권 기본조례 제정 추진계획



광진구
(감사담당관)

- 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-
광진구 인권 기본조례 제정 추진계획

구민의 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인간의 존엄성 가치 실현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1. 추진배경

- 국가인권위원회 ‘인권 기본조례 제·개정 권고’(2012년 4월)
-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관련 조례 제정 활발
 - 자치구 단위에서도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는 추세
 - 서울시에서는 성북구, 서대문구, 영등포구 등 11개구 인권기본조례 제정
- 우리구에서도 인권 존중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구민의 인권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한 기본 제도 마련 필요
 - ※ 서울시 조례 제정 현황 : 붙임 2

2. 추진현황

- 국가인권위원회 ‘인권 조례 제정 권고’ …… 2012.4.19.
- ‘광진구 인권 기본조례안’ 구의원 발의 …… 2013.11.7.
 - 우리구 의견 : 장기검토(자치구 단위 실효성 없어 의견수렴 필요)
- ‘정책토론폰방’ 의견수렴 …… 2014.7.28.~8.22.
 - ※ 정책토론폰방 제출 의견 : 붙임 3

주요내용

- 의견수렴 : 광진구청 홈페이지 정책토론포럼
- 제출건수 : 총6건
- 주요내용
 -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, **전담인력 확보 등 선언적 의미의 조례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력 확보**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
 - 권리만이 아닌 **구민의 책무도 규정**하는 등 다양한 측면의 접근 필요

3. 추진 계획

■ 국가인권위원회 표준안 분석

-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및 업무 명시
- 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3~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
-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1회 이상 인권교육 및 주민홍보
- 인권전담부서 설치 및 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 지원
- 인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인권위원회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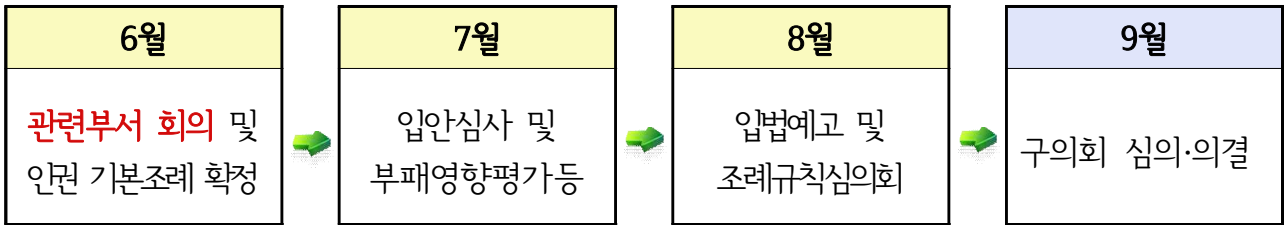
■ 우리구 실정에 맞춘 내용 보완

- 장애인, 청소년, 기타 인권 관련 분야에 대한 각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**분야별 주요내용을 기본 조례에 포함하여 제정 추진**
- **조례의 시행 시기 및 실효성 담보(전담부서(팀) 설치, 위원회 설치, 예산 확보 등)방안에 대한 논의 필수**

■ 추진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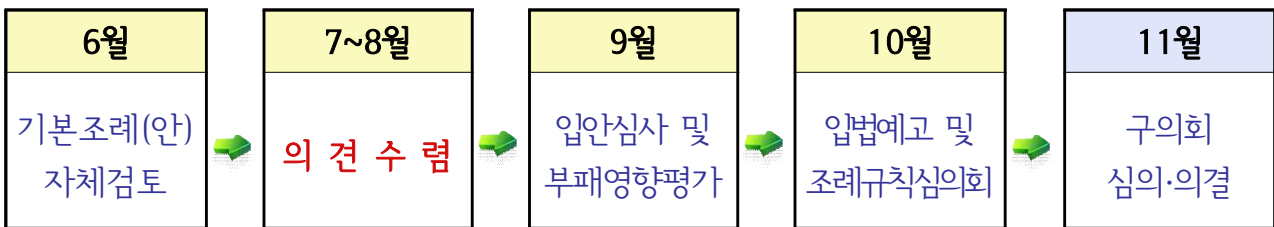
- 제1안 : 표준안, 타 자치구 조례 검토 후 감사담당관에서 입안
 - 장점 : 인력 및 예산 절감, 최소한의 규정만으로 입안 가능
 - 단점 : 선언적 의미의 조례 제정에 그칠수 있음.

- 추진일정



● 제2안 : 주민 및 인권단체 의견 수렴 후 입안 [2안으로 추진]

- 장점 : 다양한 의견 수렴 가능
- 단점 : 조례제정 기간의 장기화 가능성
- 추진일정



4. 행정 사항

- 국가인권위원회, 서울시, 타구 조례 검토 : 감사담당관
- 분야별 인권 규정 의견 제출 : 교육지원과, 사회복지과
- 예산 지원 협조 : 기획예산과

- 붙임 1. 표준안 및 광진구 인권기본조례(안) 비교 1부.
 2. 서울시 조례제정 현황 1부.
 3. 정책토론평 제출 의견 1부. 끝.